

제43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6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8)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7)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3)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4)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7)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4)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2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2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2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2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공소청범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3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3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33.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34.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35.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3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3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4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4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7) 철회 동의를 건
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76)

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8)
 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7)
 4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356)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5
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7) 5
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2) 5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3) 5
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234) 5
1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5
1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6) 5
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6)
 5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9) 19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3) 20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4) 20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5)
 20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0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0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1268) 22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7)
 23
1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1224) 23
17.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1225) 23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5
19.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26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	26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26
2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26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27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27
2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27
2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27
2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28.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27
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27
3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27
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27
3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27
33.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27
34.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27
35.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27
3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27
3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27
3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3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27
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27
4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27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27
4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7) 철회 동의의 건	43
○ 의사일정 상정의 건	43
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76)	44
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8)	44
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7)	44
4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6)	44

(16시34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6개 위원회 소관 18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오늘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24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철회 요구가 있는 법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갑시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35분)

○위원장 서영교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타 상임위 법안심사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는 기관 중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님이 공식 일정에 따라 오후 4시 40분에 이석해야 하는 사유로 인해 행안위 소관 법안과 재경위 소관 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7)

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3)

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4)

1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1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6)

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6)
(16시36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7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김종철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박형수 그리고 윤상현, 박은정, 박지원, 이성운, 광규택 이렇게 여섯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명단을 적어 주시고요. 서로 교차로 3분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오늘 지금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법률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후속 법안들을 형사소송법 부칙과 공소청법 부칙에 다 넣

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처음에 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률 형식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자꾸 수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법안을 성안해서 통과시켜서 올라온 법률들이 지금 현재 타위법 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후속 법안인 이 법률들에 대해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 형식상으로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일일이 한 건씩 반대하고 표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를 사전에 밝히고 표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검사징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검사징계법에는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징계위원회 임기가 3년인 것을 1년으로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오히려 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표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수청 법안이 있는데 중수청 법안은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규정들을 명확하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해 놔는데 오히려 이것이 원래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원래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규택 위원님이 또 상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광규택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이성운 위원님 순으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행안부장관님, 저는 법안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행안위에서 5·18 정신적 피해자 공소시효를 소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행령이든 뭐든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과거에 보상했던 것이 들쭉날쭉해요. 그러한 것도 잘 처리해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5·18기념재단에 신고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신고받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지원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줬습니다마는 우리가 강

제징용,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보상을 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에 국내 강제징용을 받은 사람은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는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해남 옥매광산의 노동자들이, 거기가 광산의 발파 공이에요. 제주도에 일제가 비행장을 지으면서 발파공들을 데려갔어요. 징용시켰단 말이에요. 국내지요. 그런데 독립이 되니까 배로 돌아오다가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했던 말이에요. 이 118명이 아무런 명예회복도 안 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됐는데 그러한 것도 제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꼭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50%, 광역단체에서 30%, 기초단체에서 20%로 해 가지고 2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역의 노인들이 그게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돈을 안 써요. 찾지 않고 그것 모아 두었다가 추석, 설에 도시에서 아들들, 딸들이 오면 그것을 다 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인들의 소비경제는 어렵고 사실 용돈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불금정치 민생단에서 얘기된 것인데 최소한 기초단체에서 나오는 10만 원이라도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노인들이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역단체까지 포함해서 50% 정도는 지역상품권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시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지금 중수청법 개정안 제2조의2호 나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2호의 나목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중대범죄라는 것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리고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추가를 시켜 놓고 있지요.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 에 따른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항이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 것인데 그 끝에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성폭법, 아청법, 스토킹범죄법 등등 7대 범죄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건송치 규정을 각 해당 법에다가 다 넣었지요. 그래서 성폭법, 아청법 등에 그런 전건송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 전건을 송치하라고 하는 규정인데 여기다가,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가 오히려 이 7대 범죄로 한정되는 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규정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그 부분을 빼야 내용이 맞는 거거든요, 체계가.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것이…… 지금 제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게 법 내용을 보시면 이게 잘못된 조항,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그 이하 부분을 빼야 이게 내용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을 드리면요,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로 국한하는 의미보다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혹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수사요청이 오더라도 그 소관을 다른 수사기관과 다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려해서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 위원** 장관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오히려 이게 그 취지에 안 맞는 규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보시면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하셔도 7개 각각의 법률의 전건송치가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것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이송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하 부분은 빼는 게 맞습니다. 빼는 게 맞고, 이것을 이렇게 넣어 놔 버리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2호 나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7대 범죄로 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법규 규정 내용이 그렇게 되어 버려 가지고 이것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일리도 있는 말씀이어서 좀 검토를, 한번 더 보시고요.

○**박형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 최기도** 예,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다음 토론해 주실 건데요.

김한규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박은정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이성운 위원님 이렇게 토론 가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행안부장관님, 김지용 중수청장후보자 지난번에 질의드렸는데 청와대에
서 지금 추가 검증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언제까지 추가 검증할 건지 그 기한이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꼭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10월 2일
까지 임명 절차를 마치고자 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지용 후보자로 계속 인사청문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인사청문회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정 위원** 김지용 후보자를 그러면 계속 후보자로 인사청문 요청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뭐 그렇게……

○**박은정 위원** 추가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추가로 그동안 검증이 안 됐던 부분을 다시
보시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단 제가 9월 7일에 제청을 했고요, 9월 8일 대통령께서 지
명을 하셨습니다. 지명 이후에 지명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명이 보류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김지용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을 할
때…… 2020년 10월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 정진웅 검사를 기소하는 데 관여했고, 2021년
7월 김학의 출금 사건 문재인 정부의 민정비서관을 기소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 두 가
지는 모두 무죄 확정이 됐고요. 억울한 수사를 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박은정 위원**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연판장에 서명을 했고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4월 21대 국회 검사 수사권 축소 법안을 마련할 때 그때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
으로 대검 간부들하고 나와 가지고 저렇게 민주정부에 항명을 했고 권한쟁의심판 청구까
지 하겠다고 했던 검사입니다. 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한동훈이 두 달 후에 6월 27일
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정확하게 했고요.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김
지용 후보자는 한동훈과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편들었던 김지용 검사를 국민주권정부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시
는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반개혁적 인사입니다. 그 외에도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증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 검증을 똑바로 하시고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하게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하나하

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단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윤석열 또는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수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데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청문 요청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총장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는가가 그 사람을 알려 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과거 행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과거에 그 사람이 반개혁적인, 윤석열·한동훈 편에 서서 윤석열·한동훈 쿠데타에 가담을 하고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의 피해자, 한동훈을 피해자라고 왜곡해서 기소했던 장본인 검사입니다. 그랬던 검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조우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민주정부를 향해서 했던, 항명했던 검사……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장, 집단항명 검사장들을 인사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와 같은 잣대로 김지용 후보자, 집단항명을 했던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검사들에 대해서는 집단항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요. 검사들은 이 정부의 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부의 영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를 놓고 검증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말씀은 법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의 주제와도 맞지 않고.

그리고 더욱이 시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행안부장관님,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진행은 제가 하고요.

중수청장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의 가장 정점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도 지난번에도 들으셨던 말씀이실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더 검증하시고 또 청문보고를 요청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검증하시고, 하신 말씀을 잘 새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가셔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계속 뭐가 오던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누가 대참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차관이 세종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도착……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렇게 대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분 마저 하고 나면 의결할 건데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5시 40분까지 외교 행사에 참석을 해야 돼서요. 이동시간 고려하면 지금 일어나야 되기는 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러면 이석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원장 서영교 이성윤 위원님 먼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대참하실 차관이 왔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 서영교 차관 오시고요.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중앙선관위 강동완 총장직무대리님, 어제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한동훈 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가 제출돼 있더라고요.

김승원 후보 청문회하고 한동훈 의원 후원회 회계보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직접적인 연관 부분은, 지금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법에는 ‘직접 연관된’이라는 표현은 돼 있지만 저희 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연관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제출 요구를 받게 되면 저희들은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이게 법무부장관후보자 자질, 도덕성 검증,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동훈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가 필요한가?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무적으로 한번 중앙선관위 내에서 이 문제를 검토, 사전 조율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그……

○윤상현 위원 직무대리님, 그러면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자, 어떤 특정 정치인을 딱 놓고 그 사람의 후원회 모든 자료를 달라 하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실제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게 줍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드리고 있고요, 일반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김승원 후보자 어떤 검증적인 측면에서 녹취록 등 여러 자료를 계속 그렇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 대상에 대한 정치자금 내역을 만약에 보여 준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어떠냐? 법에 의해서 그게 정보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일반 사람들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후원회 내역이라든지 여러 선관위 업무에 관련된 것을 얻어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으니까 공개적인 정보청구의 방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 주는 게 훨씬 더 중립성 논란을 비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선관위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식 공문 접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당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 공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사유서도 제출해야 되고 기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선관위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안에 대해서 건건이 이게 사유에 맞다, 그르다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순간에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저희들이 큰 실례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는 자료고 또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제출요구가 들어온 자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여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되는 자료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드리고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선관위에 자료 요구를 하시게 되면 항상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후원회에 관련한 내용이 이렇게 공개돼 있군요,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그렇습니다. 회계보고 내용은 공개되고 있고요.

○**위원장 서영교** 회계보고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그리고 고액 후원자라고 해서 연간 300만 원 초과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역은 성명과 기부금액, 기부일자 같은 것들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공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선거비용과 관련된 것은 선거일 후 6개월까지, 공개된 후, 공고일로 6개월까지로 제한이 돼 있는데 그것 말고는 상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를 출신 이성윤입니다.

행안부차관님, 성함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김민재입니다.

○이성윤 위원 차관님이시지요, 김민재 차관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 장관님께서 다른 말씀을 좀 하셨어요, 문제 제기를 또 하신다. 그런데 그만큼 그게 중요하고 또 윤석열의 과거 언행에 속아 가지고 총장으로 임명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성윤 위원 차관님, 중수청 개청준비단장님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준비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본적으로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개청 사전 준비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령 제·개정이라든가 검찰청과 중수청 간 업무 인수인계, 그다음에 조직·인력 구성, 예산,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이런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성윤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장님, 청와대 파트는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본적으로는 민정수석실에 사법제도비서관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이성윤 위원 그러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부단장은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진용 부단장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분은 현직 검사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검찰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현직 검사를 부단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추진단, 개청준비……

○이성윤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왜냐하면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서 행안부, 저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런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단장으로 위촉하게, 임명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요? 차관님, 그런데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지영 비서관이……

○이성윤 위원 그다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단장도 검찰 출신, 그다음에 후보자도 검찰 출신,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나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라, 수사·기소 분리하라 국민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검사들이 다 가 가지고 거기서 말이지요, 그 인력·예산·조직을 다 짜게 되면 결국 ‘검찰의 수사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는 것 아니냐?’,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검찰청이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소청하고……

○**이성운 위원** 분리를 시키는데 왜 검사들이 가서 시키냐 이 말이에요. 검사들 조직문화 뻔하잖아요? 상명하복 또 수사지휘, 그 문화가 가면 그대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똑같이 제2의 검찰청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물론 위원님, 그 부분도 있지만 중수청의 가장 큰 역할은 중대범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대범죄에 대한 경험, 수사 경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이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운 위원** 그러면 경찰은 전문성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경찰도 들어와, 파견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특례 임용으로 일단 1차 충원은 하지만……

○**이성운 위원** 중수청에서 검찰청 수사 영역을 받아서 수사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리하는 취지가, 수사·기소 분리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보장하자는 거잖아요.

차관님, 수사를 더 잘하면 뭐를 분리합니까? 차관님 인식 자체가 저는 좀 다시 생각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지금 현직 검사 4명 와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성운 위원** 그분들이 무슨 역할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사 준칙과 같은 규칙 같은 것을 제정하고 있고요.

○**이성운 위원** 그리고 청와대도 검찰 출신이고, 개청 준비하는 걸 검찰 출신들이 다 짜고 있으면 결국 다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왜 검찰 출신 중수청 후보자로 앓혀 가지고 3명이, 청장도 검찰 출신, 준비단도 검찰 출신, 사법제도비서관도 검찰 출신,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러려고 검찰 개혁했겠냐 이런 불안을 갖고 갖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말씀하실 때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 중에서 나온 부분의 내용은 저희 안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전문위원과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형수 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3분 보충설명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이 규정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형사소송법에 재수사요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관서, 그 기관을 못 믿을 때,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걸 못 믿을 때 경찰청에다가 수사를 맡긴다든지, 그러면서 다른 수사기관을 표현해서 상급기관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왜 들어왔냐면 장윤기 사건을 대비시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그 아버지와 수사팀장이 결탁을 해 가지고 지금 증거를 인멸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건을 보완수사를 하라 그러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경찰청에다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중수청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건 송치와 전혀 관계없이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려면 죄명에 상관없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을 해 버리면 원래의 형사소송법의 규정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는 죄명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에 그 수사기관에다가 다시 수사요구를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이다—아까와 같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는지 이럴 경우에—그래서 다른 수사기관, 중수청에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을 해 버리면 그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이 뒤의 거를 사실 없애야 되고 원래는 이 규정이 없어도 돼요. 중수법에 이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의 규정만 있어도 충분히 중수청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은 그걸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기구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이게 더 복잡해져 가지고 이 뒤의 단서 부분을 빼든지 아니면 이 조항 자체를 들어내 버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검토해서 저희가 의결하고 위원장에게 그걸 좀 맡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러면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 잠깐 좀……

○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위원님 하시고 또 수석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하겠다고 하니까.

김용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 부분이 들어간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가면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 다시 말해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보완수사요구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수청이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의 수사

권이 생기는, 관할권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라고 해서 중수청에 보완수사…… 원래는 중수청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중수청에 집어넣자라고 해서 지금 이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 온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7대 범죄를 넣자.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맞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원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중수청의 원래 수사 범죄 대상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규정이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야, 아니지.

○위원장 서영교 우선 지금 말씀처럼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찰에게는 보완수사를 못 맡기겠다, 그렇다면 상급기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형사소송법 할 때 했고 그러면서도 7대 범죄 관련해서는 보완수사요구를 중수청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처럼 이 내용은 살리고 그 내용까지……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아주 연루되어 있거나 이래서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경우에 못 넘기는 일은 없게 그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범위가 괜찮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형소법하고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가능한 내용을 맞춰야 되는 게 해석론의 여지를 줄이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곽규택 위원님 사항처럼 단서를 여기 7대 범죄로 한정한다를 삭제하면 검사가 보내는 모든 사건을 이제 중수청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해석론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지금 체계·자구 검토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수정의견은 재수사요구라든가 보완수사요구 그리고 이송 요청을 위해서 검사가 중수청으로 사건은 보내는데 중수청이 모든 사건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예시된 7대 범죄, 7대 범죄 플러스 원래 중수청 관할이 중대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절충하시면 어떤지.

그래서 재수사 요구하거나 보완수사 요구할 때 중수청은 모든 범죄를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중수청 관할 범죄인 중대범죄와 플러스 지금 여기 열거되고 있는 7대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원래 법 취지가 그겁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에요.

○박형수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김용민 위원 아니, 원래 하기로 했던 합의가 그거였어요.

○곽규택 위원 아니야, 아니야.

○위원장 서영교 우선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서 좀 수정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수정 보완이 아니고, 그런 취지라면 수정 보완이 안 되고 양립 불가능한 얘기예요, 양쪽이 지금.

○**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위원님 말씀도 있고 원래 취지는 광규택 위원님이나 박형수 간사께서 얘기한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장윤기 사건처럼 그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걸 그 경찰에게 또 못 맡기겠다, 상급기관에게도 맡기고자 했지만 거기도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중대범죄수사청에다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넣었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 있고……

○**박형수 위원** 그 취지대로 하면 이거 없애야지.

○**김용민 위원** 그런데 그걸 한정해야지. 안 그러면……

○**광규택 위원** 아니야, 한정이 아니야.

○**박형수 위원** 아니야. 그래도……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갖고 있는 범죄에다가 경찰 그리고 검사가 저지른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대형범죄 등과 함께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 있게 저희가 넣어 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넣어서 저희가 해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항, 11항, 제13항 및 제1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박형수 위원** 아니, 이렇게 해 놓고 그걸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문구가 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양쪽 취지를 다 담는 게?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그 법안에 수정해서 보완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박형수 위원** 아니, 위임하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30초만 위임하는 그……

○**위원장 서영교** 예, 30초 말씀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30초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이 규정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됩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그 사건은 살인이에요, 죄명이. 살인으로 송치가 됐거든요. 7대 범죄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디로 돌려보내야 되느냐, 만약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경찰서나 경찰청이나 광역경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에다가 하게 돼요. 그런데 국수본의 본부장이 사건을 강간하고 이거하고 떼라고 해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장윤기 사건에 대비를 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규정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그 관할이 창설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거는 관할 창설이 되는 거를 전제를 하고 이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지 해석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조화가 안 됩니다. 이걸 왜 이 규정을 다른 수사관서라는 걸 넣어 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넣어 놓은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3항 및 제1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보완하는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이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이 위임받고자 합니다.

김민재 차관님,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들으신 거 잘 보완하시고 참작하시고요. 아까 박은정 위원께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관심이 다 있는데요. 검증을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강동완 중선위사무총장직무대리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김종철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9)

(17시19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1건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세법 관련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장소에 종전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그 내용을 넓히면서 법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허장 재정경제부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께서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장 차관님, 인사말씀하고 가시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감사합니다.

제가 법사위에는 처음 와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처음 오셨는데 잠깐 앉아 계세요. 저희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한참 기다려 갖고, 처음 왔는데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하고 가네요.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대한민국 경제 잘 살려 주시고, 박지원 위원님께서 하고 싶으신 얘기도 많으시고…… 어쨌든 경제 잘 살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서 경제에, 세수도 많이 들어왔는데 국민에게 골고루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자 붙여 전달해 주는 일, 돌려 드리는 일 그런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3)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4)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5)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시22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정무위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무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로서 금감원 원장 등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 중인 경우를 추가하고 공소청 단계에서는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에도 의원 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께서 국외출장, 뉴욕 포담 국제 반독점 콘퍼런스 참석 일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오셨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다 동의하신다고 그래서 이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인사말씀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하여간에 민생 챙기는 데 더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기회 주셨으니까…… 공정거래 업무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방위입니다.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268)

(17시24분)

○**위원장 서영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정보의 처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공소청의 장을 그다음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통신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각각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계서 출석하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계서 대리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겸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님, 별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옛그제 감사원에서 YTN 문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YTN 매각 승인 문제 지금 방미통위에서 어떻게 결정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공익활동으로 이익충돌 문제가 있어서 회피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으로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된 새로운 사실에 바탕해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류제명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자중기위 법안입니다.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7)
(17시26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의사일정 제15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나 공무수탁 사인의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검사가 요청한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차관께서 대리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통과돼서 두들기는 저도 쑥스럽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인사말씀하실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이고, 아닙니다.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밀히 잘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위입니다.

1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4)

1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225)

(17시28분)

○위원장 서영교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제17항,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일반 지원시설의 업무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의 동행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진술조력인 지원, 외국인에 대한 권리고지 등에 관한 규정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장관님, 최근에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박은정 위원 그 피해자들이 인터넷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서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구글에서 피해자 이름·전화번호·학교·주소·직장,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지금 유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동영상, 피해를 입은 이 영상이 삶이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삭제하는 것이 가장,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도 삭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2차 가해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최근에 구글에 대해서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글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직후에 바로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를 진행해서 저희가 아직은 좀 미흡하긴 하지만 구글로부터는 재발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여러 가지 법 제도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제도가 보완되는 대로 위원

님께 다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유출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삭제가 확실하게 된 건 맞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건 확실하게 됐고, 구글로부터 재발 방지와 관련한 확실한 어떤 약속을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구글이 사실은 불법촬영 동영상의 온상이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구글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삭제 요청을 했는데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면서 다시 삭제 요청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지금은 한국발 구글에 삭제 요청된 모든 정보가 문제가 되었던 사이트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까지는 구글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박은정 위원 거기서 넘기지 않는다는 약속은 받으셨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글에 추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정 위원 이 사안을 제대로 처리해 가지고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문체위 법안입니다.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시32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정책자문회의 회의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들 법률안들은 지난 4월 22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문체위에서 통과된 지…… 지난 4월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와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회의 계류시켜 놓았던 안건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문체위 위원들과 문체위에서 요청해 왔고 그런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전체회의에 있지만 현장의 민생지원을 위해서 빨리 통과시킬 법안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제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견이 잘 해소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해소됐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스포츠안전재단 설립에 관해서 예산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했는데 그 규정을 뺐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것만이 아니라 파트너선수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 부분도 기획예산처랑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기존에는 스포츠안전재단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진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트너선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는 내용…… ‘노력할 수 있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오늘 합의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내용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파트너선수들의 처우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정리되면서 합의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내용을 간사님이 얘기해 주시려고 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김의겸 위원 아닌데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소위 의결 법안 심사입니다.

다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9항부터 제42항까지입니다.

19.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2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2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2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2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3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3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33.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34.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35.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3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3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4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17시38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2항까지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의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의겸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개정안에 대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공소청 신설 등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 관련 내용, 검경 협력 관계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의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면서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개정 수준을 초과하는 28개의 법률의 개정 부분은 삭제하여 별도의 개정법률안으로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선원법상 검사의 수사권 삭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사의 지휘권 삭제, 검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는 조문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정리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경미한 수정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 변경에 따른 적용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부칙 타법 개정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도 개정안으로 발의된 법률안 법률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군사법원법, 외국법자문사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소청법 부칙을 통하여 사면법 등 61개 법률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개정안으로 발의된 10개 법률은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정비 대상 법률에서 공소청이 의미하는 기관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법 부칙 타법 개정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도 개정안으로 발의된 법률안 중 검사징계법, 형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 정비 및 부칙 특례 신설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영교·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군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방부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김남희·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의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어서 오십시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두희 국방부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규백 국방부장관께서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으로 인해 차관께서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

○곽규택 위원 기관 의견을 안 들어 보나요? 바로 토론하면 됩니까?

○위원장 서영교 기관 의견이요?

○곽규택 위원 따로 없이 그냥 바로?

○위원장 서영교 예, 오늘은 바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그리고 곽규택 위원님 이렇게 토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저부터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국방부차관님, 내일 NSC 상임위원회 열리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NSC는 저희 국방부에서 확인해 드리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상현 위원 하여튼 상임위 열립니다.

호르무즈 파병안 올렸습니까, 청와대에?

○국방부차관 이두희 마찬가지로 NSC 관련되는 부분은 안보실에서 관장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도 국방에 관한 문제인데……

당연히 NSC 상임위원회 안 들어갑니까,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장관님 들어가십니다.

○윤상현 위원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검토 중이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윤상현 위원 그러면 UAE에 현지조사단 온 지 벌써 한 6일 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복귀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미 결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미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국민 여론을 보면서 규모, 방식 또 발표 시점을 보고있는 단계다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저는 지난 3월에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미동맹과 국익적 차원에서 호르무즈 비전투 방어용 임무에 부대를 보내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밀려서 밀려서 결국은 이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방법, 생색을 내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비전투 방어용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런 규모로 보내지만 이걸 위해서 미국도 우리한테 핵추진잠수함 아니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또 미국·북한 관계 등에서 우리하고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식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계속 검토, 검토만 한다고 하니까……

차관님,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단 갔다 온 것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 준비 차원에서 갔던 건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 파악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것 아니라고요. 공식적인 거고요.

그러면 안 보낼 거예요, 차관님? 소위 말해서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보내다 했다가 이것 문제가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해상초계기 또 무인장비 보내자, 폭발물 처리장 보내자 이걸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해진 것 없다, 검토 단계다 이런 식의 발뺌하는 게 오히려 결국은 미국한테 생색도 못 내고 ‘재네들은 피동적으로 하는 존재야’ 이런 식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파병은 저희가 누차 발표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고 국민의 안전이나 또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 전반적인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상현 위원** 박지원 대표님 한 말씀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윤상현 위원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국방차관 대답도 잘했어요. 똑부러진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처장님, 의사일정 29항 공수처법 개정안의 26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보완수사 요구는…… 문제인 정부 2021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이것은 검찰을 건

제하는 독립된 기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규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것이지요. 독립된 기구이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경찰을 통제하는 보완수사 요구 규정이 공수처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상 사건을 송부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보완수사 요구를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면…… 공수처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서로 간의 견제, 특히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이 보완수사 요구 규정, 특히 보완수사 요구 규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석방 의견이 공수처와 그다음에 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 간에 공수처에서 검찰에 대한, 공소청에 대한 뭔가 확실한 견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공수처의 취지를 벗어난다, 그래서 이 법은 공소청의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와 공소청 검사가 서로 간에 수사 절차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저는 이 법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하시려면 표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공수처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에 비춰 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점에서는 감사합니다. 다만 징계요구나 이첩요구 조항에 대해서 경찰하고는 달리 또 그런 조항이 우리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항뿐만 아니라 공수처법의 개정에는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늘 생각해 주시고 독립수사기구로서의 공수처의 어떤 존재감에 훼손이 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늘 숙고해 주시고 또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어찌하였든 공수처법의 어떤 개정 물꼬가 트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허들이 놓여져 있는 공수처법 개정이 선한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공수처 검사는 그것에 따라야 하는데 보완을 해야 된다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 일방적일 수 있는 거지요. 같은 법률가인데 공소청 검사만이 보완요구, 보완이 필요하다, 무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공수처 검사는 그에 따라야 되고 기소를 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여지

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공수처장님,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제대로 된 수사를 방해한다, 그러면 그건 무슨 범죄인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형태로 되면 우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어떤 무한히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보완수사요구의 형태로, 특히 내란수사 같은 경우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만일에 보완수사요구의 형태로 악용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인데 어쨌든 새로운 보완수사요구와 관련돼 가지고 제도적으로 또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독립수사기구인 공수처하고 또 검찰청 검사하고 잘 협의의 정신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 공소청에 의해 의도를 가지고 손 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만 박은정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또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말씀처럼 내란 때 체포했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공소청 검사가 지금 상태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때 그 당시는 내란재판부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원과 그다음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만일 보완수사요구라는 게 제도화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갈 것도 없이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속에서 어떤 편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위원장 서영교 이게 고위공직자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인데 그게 보완수사요구가 되나요?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정 위원 지금 그걸 넣겠다는 겁니다, 이 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 범죄……

○위원장 서영교 고위공직자에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3급 이하의 경찰이나 3급 이하에 관련한 수사인 경우에 그 부분이 원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서 3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혀 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소권을 갖는 범죄 이외에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시는 보완수사요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논의되는 보완수사요구 조항을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 서영교 그게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기소권을 갖는 범죄와 저희들이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따라서 보완수사요구 조항이 적용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대통령에 해당되면 적용 안 된다는 그런 논의는 조금은……

○위원장 서영교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그게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저희들이 기소권을 갖는 범죄가 아니고 직권남용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희들 제도 운용에 있어서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은 훼손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공수처의 존립 근거고 또 설치 이유이기도 하니까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검사가 그런 중대한 범죄를 보완수사요구로 해코지를 놓는다면 그 검사는 수사 대상이 되고 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걱정 부분을 또한 한번 더 세심히 볼 수 있게 되고 지금은 현재 법의 취지에 따라서 가고 있으니 또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광규택 위원님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 이렇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광규택 위원님 하시고 박지원 위원님 해 주십시오.

○광규택 위원 의안 19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 중에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3년으로 돼 있는 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형소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징계위원 중에서 법무부차관이라든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 같은 경우는 직책에 따른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장관이 바뀌면 바뀌겠지요. 그런데 장관이 임명을 했지만 장관 임명보다도 통상 길 것으로 보이는 3년이라는 임기를 가진 징계위원들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그리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렇게 5명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5명에 대해서 임기를 3년이라고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법무부장관보다 더 임기를 확실하게 길게 해 두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체제가 검사징계위원회의 어떤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훨씬 더 맞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1년 단위로 모든 징계위원을 다 법무부장관이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요 새로운 장관이 와 가지고 어떤 특정한 마음을 먹고 징계위원들을 다 바꾼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골라서 특정 검사를 갖다가 징계하는 게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못 하게 하는 게 맞지요.

차관님, 혹시 제가 오전에 소위 때, 3년 임기 조항이 있는 이게 2020년 10월 달에 개정된 것으로 돼 있던데 임기도 혹시 그때 개정됐던 사항인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확인 지시를 했는데 제가 아직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광규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때 개정된 것이건 아니건 간에 이거는 이번 형소법 개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이렇게 끼워 넣기 한 것이 굉장히 저는 불순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관 새로 바뀌는 타이밍이잖아요. 그 장관후보자 논란 많잖아요. 그 장관후보자가 총대 메고 징계위원 다 바뀌 가지고 자기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 징계하겠다고 달려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법무부차관님,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했어요? 지금 고발됐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경찰에 내부보고서 유출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한동훈 의원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차관도 분명히 한동훈 의원이 검찰 캐비닛에나 있을 법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특히 그 사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내부보고서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엑스파일이 존재해요. 거기에는 모든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비리가 전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는데 그것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혹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제가 알아 가지고 나와서 지금 국정원장을 관두고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한동훈 의원도 검찰에서 수사기록이랑 기소기록 이러한 것들을 계속 폭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위법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범죄를 구성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출국금지 시키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관련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토론 다 하셨습니까?

○박지원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장님, 시간 주시면 국방부 기관 의견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예, 국방부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김남희 의원님 발의하신 군사법원법 관련된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1조의2 군사법 정보시스템 완전 전자화하는 부분인데 법안1소위에서 유예기간을 3년으로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전자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3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간,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과거 사례들을 보면 7년, 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이 ISP 예산 획득 1년, ISP 사업 1년, 구축 본예산 획득 1년, 구축사업 3년 정도 해서 통상 7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안을 3년으로 의결하더라도 저희가 3년 이내에는 정부 예산 시스템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01조(재정신청) 관할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당초 법안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난 일요일 날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으로 제시해서 법안1소위에서 논의가 돼서 채택이 돼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국방부 군사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이 내년 2월 7일부로 돼 있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이 논의해서, 이 부분은 빠고 의결해 주시면 별도로 논의해서 법안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결론적으로 3년을……

박형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3분 드리세요.

○박형수 위원 지금 국방부차관이 말씀하신 얘기를 아까 1소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소위 위원들은 3년, 7년 이거를 일단 3년 시행을 하고 또 필요하면 연장하는 걸로 했는데 국방부차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저히 3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확보하고 구축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적절하게 한 5년 정도로 일단 저걸 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하는,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재정신청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1소위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고등에다가 새로 재정신청 전담부를 만들어야 되는 등의 부담이 있고 또 국민에 따라서 신분이 군인이냐, 군사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냐, 민간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재정신청의 관할이 고등이 되고 합의부가 지방법원 합의가 되고, 이거는 꼭 평등권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다 고등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 지방법원 합의부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의 균형상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의겸 간사님.

○김의겸 위원 박 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군사법원법에서 재정신청 관할 변경을 한다면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관련된 법률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42항의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그리고 33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군검사의 불기소 통지가 있을 경우에 관할 법원을 ‘관할 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법을 박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할 경우에 이 두 가지 법안도 같이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소위 내용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사기록의 전자화……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하는 데 7년이나 걸리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가예산체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그 순기대로 하면 이제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수사기록의 전자화는 예산을 천천히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모두 다 전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일반문서 말고 녹음이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인데 정부예산 순기가 1년 단위로 되지 중간에 예산을 태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금년 11월에, 내년 27년도 예산은 이미 저희 정부안이 지나갔고 지금 의결이 되면 저희는 내년에 협조를 해서 28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28년도는 ISP라고 사업타당성 검토하면 벌써 3년이 초과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착수도 하기 전에 3년이 초과되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박형수 간사님께서 5년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산 순기로는 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 나오는데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5년 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법을 수정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소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러면 지금 수사기록들이 전자화돼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문서는 전자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완전 전자화 해서 녹음파일이나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자화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걸 하는 데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과거에 민간 형사사법시스템도 구축하는 데 18년부터 24년까지 7년이 걸렸고 또 형사전자소송 수행 관련된 부분들도 8년이 걸렸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들, 어쨌든 그러면 5년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지요?

7년으로 해야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저희는 7년 해야 정상인데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으로 하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법을, 수정을 저희가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석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상황 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저희가 KICS 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건 특사경까지 모두 전자화하는 것을 예정했고요. 형사소송법 부칙에 보시면 최대 3년까지만 저희가 유예해 놔서 군사법원 경우에만 7년까지 한다는 게 지금 현행 정비 차원에서 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내에 예산 확보나 이런 걸 노력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렇게 우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이따가 의결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사법원 관련한 재정신청 관할에 관한 것인데요. 법원행정처와 좀 상의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정상적으로 법안으로 했다기보다는 지난 일요일 날 저희가 의견으로 받았는데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소위에서 법안에 반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들께서는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말씀 기회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통일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건이 지방 항소부에서 처리되는 마당에 굳이 군사법원 사건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게, 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특수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저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군사법원법의 특성이 있는데 이게 검찰 단계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재정신청을 법원으로 하는 건데 군사법원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방법원 단위로 군사적인 특성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 지방법원별 합의부로 해서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의 의견 들어 가지고 결정합시다. 양쪽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인데 그 둘이 계속 토론시켜 가지고 결론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그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의견 전달이 국방부로 언제 갔습니까? 일요일에 의견으로 갔다면서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이게 당초 법안에 반영돼 있던 내용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으로, 일요일 오후에 저희가 받았습시다. 그리고 월요일 날 10시에 바로 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우선 이렇게 하시지요. 1소위에서 의결된 부분이라서, 지금 의견이 나왔으니까 우선 의결하시고요.

그 부분을 전체회의에다 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의결한 다음에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의결 안 하고, 이 부분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군사법원법과 관련된 군 재정신청에 관한 조문이 군사법원법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특례법 여기도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3개 법안이 서로 연관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신다면 3개의 법안을 다 계류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3개의 법안만 계류시키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곽규택 위원 형소법 부칙이 계류가 되면 안 되지.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것 썩 다 계류시킵시다. 뭐 하려고 다 하는데 이거? 마음대로 하고 있어.

○김의겸 위원 아니, 그런데 형사소송법…… 이것 제일 틀이 큰 건데요.

○위원장 서영교 3개가 아니라 큰 형태를 계류시켜야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지금 제일 큰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다 계류시킵시다.

○김한규 위원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존중을 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충분한 논의는 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월요일 날 그날 하루에 처리된 것도 아니고 오늘까지 계속 논의한 거고요. 아까 박형수 간사님 말씀하신 5년으로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전체회의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재고할 수 있는데……

○위원장 서영교 마이크 넣어 주세요.

○김한규 위원 죄송합니다. 재정신청 부분은 이미 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정부하고 논의가 완전히, 이 부분은 부처 간에 더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는 어렵고, 평행선이고. 저희가 양쪽 기관의 의견을 듣고 여하튼 재정신청은 한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소위 위원들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위 위원 의견대로 이 재정신청 부분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소위에서 정한 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의견을 말씀 못 드렸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저는 7년이나 걸리는 건 도저히 이해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 법원은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가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이미 비슷한 시스템이 다른 정부기관에서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기한을 정해 놓으면 그거에 맞게 국회도 예산을 신속하게 반영을 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분들께서 국방부의 의견을 고려해 주시고 박형수 간사님도 말씀하시니 5년 정도로 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이렇게 법안 처리하면 국회에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편성 신속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국방부차관님, 제가 국방부장관님께도 말씀을 듣고, 제가 19대 때부터 국방개혁 과정 속에서 재정신청이나 이런 게 법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법무부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지

만 의견이 있었으니 오늘은 이렇게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좀 더 논의할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의견들이 그렇게 됐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장 서영교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장님께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니까 제가 30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서 물꼬를 터 준 위원님들한테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수사권만 갖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신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수사 때 법원의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일에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완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목격했는데 그런 위법행위에 길을 터 주는 꼴이 되는 악용의 소지가 일부 남아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추어 가지고 공수처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부칙에 들어갈 조항을 지금 공수처법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되셨습니다. 그 부분의 의견을 듣고요. 저희가 지금은 전체 흐름 속에서 정비하는 법안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검사징계법 원안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폭력행위 처벌법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법경찰직무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사법 수정 의결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법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집행법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사절차 전자화법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소청법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수처법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본인들 찬성 안 했어요, 국민의힘?

○김남희 위원 1소위에서 찬성하셨잖아요.

○박은정 위원 다 찬성했잖아요, 소위에서.

○곽규택 위원 관심 좀 끄세요.

○박형수 위원 찬성해요, 그러면 찬성하면 되지.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소위에서 다 찬성해놓고 왜 그러는지……

○박형수 위원 기권할 수도 있지.

○박은정 위원 일관성을 가지세요, 일관성을.

○위원장 서영교 다시 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해요, 다시 해요.

○위원장 서영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법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사법원법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토론에서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범죄 시효법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토론에서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의사일정 제36항·제3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의사일정 제4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사소송법 부칙 타법 개정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토론에서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그리고 이두희 차관님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직무대행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안1소위 의결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4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7) 철회 동의를 건

(18시30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3항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하에 철회 동의를 건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1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대해 철회 요구가 있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3항의 법률안에 대해 철회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8시31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44항부터 47항까지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속

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76)

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8)

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7)

4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6)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의 4개의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및 개정 형소법에 따른 후속 정비로써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동시에, 감치를 위한 유치장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유치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4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제2항의 경우 파견검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일정 제45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감치 장소인 구치소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1소위 회부 없이 바로 의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47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1소위로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만 이들 법안들은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 차원의 법안들로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앞서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양당 간사님과 합의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결하기 전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66조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특검법 수정 의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4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사소송법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조직법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7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의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몇 개의 법안은, 저희가 내일도 또 전체회의가 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요, 형사소송법 절차와 관련한 후속 법안들 중에 타 상임위, 보건복지위 또는 운영위 등이 그 법안을 내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후에 본회의가 있으므로 그 법안이 올라오고 나면 저희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 절차를 내일 11시경에 갖는 게 좋겠다라고 여야 간사님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한 그 부분의 회의가 진행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저희들은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여기에 계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또 입법조사관분들 등 많은 분들은 거의 밤을 새워서 오늘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왜 밖에서는 금방금방 회의를 통해서 진행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검토하고 그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 각 기관과 모든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가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도 내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진 여러분들도 그 뒷받침을 하시면서 주인공으로 일을 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 구석에 기자분들도 저렇게 있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진 김용민 김의겸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손 솔 윤상현 이성운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방부
차관 이두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4.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7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4.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9. 15. 정무위원장 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9. 15.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214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9. 15.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이상 20건 9월 15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입법예고기간)
대통령령 입법예고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법무부	2026. 9. 10. (~9. 15.)